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09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김 윤 · 박용갑 · 이수진

김 현 · 윤준병 · 이주희

서미화 · 장철민 · 김우영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등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재산 수준에 따른 실제 부담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소득은 줄었으나 거주 목적의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은퇴 고령층이나 실소득이 부족한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현행 등급제에

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
1호·제2호, 제72조, 제72조의3제1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제3
항 및 제9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8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소득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로 한다.

제69조제5항제1호 중 “보험료율”을 “소득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재산보험료율”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

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 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①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 입자의 <u>보험료율과 재산보험</u> <u>료부과점수당 금액</u>	5. ----- ----- <u>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u> <u>험료율</u>
5의2.·6. (생 략)	5의2.·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9조(보험료) ① ~ ④ (생 략)	제69조(보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⑤ ----- ----- ----- ---. ----- -----.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 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u>보험</u> <u>료율</u> 을 곱하여 얻은 금액	1. ----- ----- ----- <u>소득</u> <u>보험료율</u> -----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생략)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시 제외한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

2.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 ---

----- 재산보험료율---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①

재산

보험료부과기준액은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재산보험료부
과기준액-----

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_____.

[illegible]

④ ----- 재산
보험료부과기준액-----

 -----.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 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 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3조(보험료율 등) ①·② (생략)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생략)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 재산
보험료부과기준액-----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보험료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소득보험료율
과 재산보험료율-----

-----.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재산
보험료부과기준액을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③ -----

----- 재
산보험료부과기준액-----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 -----
-----.

1. 2.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
----- 재산보험료
부과기준액 -----

